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우형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5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우형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 경,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남창진,
박승진, 박유진, 송도호,
송재혁, 심미경, 왕정순,
이상훈,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정준호,
최기찬, 홍국표, 황철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인구 구조 및 분포와 인구 변동이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인구 관련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 활동인 인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인구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 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구 관련 가치관과 태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4.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
5.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①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 연수) ①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인구교육 사업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향후 시행하려는 사업비용을 추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가 적어 비용추계가 곤란함
2	제6조(전문가 협의)	△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개최횟수, 개최규모 등이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어 비용추계가 곤란함
3	제7조(교직원 연수)	△	교직원 연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수형태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현재로서는 추계가 곤란함
4	제8조(협력체계 구축)	×	협력체계 구축은 통상 별도의 추가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인구교육 사업비용, 안 제6조(전문가 협의)의 공청회, 간담회 개최비용²⁾, 안 제7조(교직원 연수) 교직원 연수비용³⁾은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문의결과 현재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비용을 추정하기 곤란함

- [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또한 인구교육 관련 소요금액을 추정하려면 먼저 인구교육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⁴⁾하고 소요되는 비용항목을 식별하는 한편 추가로 인구교육 사업에 대한 단가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교재인쇄비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협력체계 구축(Ex. 업무협조 MOU)은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일회성 소액지출인 경우가 많아 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Ex. 현수막, 입간판, 업무 협약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지출)되므로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예외적으로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단일사업으로 추진 시 추가재정소요 발생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향후 추진여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 요소가 없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

2) [공청회 개최비용 예시] 대관료(규모에 따라 상이), 참석수당,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각종 다과류 구매비 등이 발생

3) 가령 대면연수는 강의료, 교재인쇄비 등이 발생할 것이며 사이버연수로 진행할 경우 동영상 촬영제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연수형태에 따라 소요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서울시 인계개발원 연수비용을 참고자료 제시함)

4)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인구교육 관련 각종 사업을 교육청 및 학교에서 간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인구 관련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구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재제작 등을 추진 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

[참고] 서울시 인재개발원 연수비용(예시) - 2025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과목구분	2025년 예산내역		
사무관리비	○ 온라인 연수	=	70,336천원
	- 영상콘텐츠 제작 4,400,000원*10편	=	44,000천원
	- 강사료 360,000원*3명*3회	=	3,240천원
	- 원고료 144,000원*3명*3회	=	1,296천원
	- 통역비 700,000원*3명*3회	=	6,300천원
	- 강의자료 번역비 71,500원*20매*10편	=	14,300천원
	- 사전학습 운영비 200,000원*6개 과정	=	1,200천원
	○ 초청연수	=	110,238천원
	- 강사료 360,000원*5명*6개 과정	=	10,800천원
	- 원고료 12,000원*12매*5명*6개 과정	=	4,320천원
	- 현수막제작 154,000원*1식*6개 과정	=	924천원
	- 연수운영물품구입 90,000원*13명*6개 과정	=	7,020천원
	- 문화체험 30,000원*13명*6개 과정	=	2,340천원
	- 통역비 1,000,000원*5일*6개과정	=	30,000천원
	- 번역비 71,500원*24매*5일*6개과정	=	51,480천원
	- 보험료 43,000원*13명*6개 과정	=	3,354천원
	○ 국제화상세미나 전문가 파견	=	1,368천원
	- 강사료 540,000원*1명*2회	=	1,080천원
	- 원고료 12,000원*12매*1명*2회	=	288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